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김완섭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할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방재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로부터 재해영향성 검토를 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운영하고자 이에 필요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전에 ①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②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③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등에 관하여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는데 이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3조)

나. 위원회의 구성·임기 및 위원장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2조 및 제4조, 제5조)

-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방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함, 임기는 2년으로 함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과장이 간사가 됨.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전문개정 및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의 관련 조항이 2005년 8월 17일 전문 개정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률적인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적법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본 조례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5월 23일부터 6월 14일까지 22일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 입법예고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는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등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전에 재해영향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조 및 서울특별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
한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개의하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
하여 사안별 위원 등 관계자가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는 등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이 제시되어 있음

- 다만, 지역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소관부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 제4조제1항 “위원장을 소관국장으로 하고” 를
“위원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로
안 제5조 후단 “간사는 소관과장이 된다” 를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로

안 제6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위원장이 의장이 되고
고” 는 위원장과 의장이 서로 다른 권한은 없으므로 삭제하고

그리고 본 조례는 주민의 이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지역 주민이 본 조례를 알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하여 부칙 규정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로 수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붙임 : 1. 관련법령
2. 수정 대비표

2006. 9. 8

보고자 : 김 완 섭

〈관 련 법 령〉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2005.8.4 법률 7678호]

제4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과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본부장
2.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도지사 및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시·도본부장"이라 한다)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시·군·구본부장"이라 한다)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소방방재청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재해예방·복구 등 재해경감업무의 전문성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재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4.28 대통령령 제19463호]

제5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본부장이 구성·운영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는 소방방재청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40인 이상 8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소방방재청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지명하는 자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검토위원회는 제6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⑥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⑦검토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검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수정 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p>제4조(위원장) ①위원장은 <u>소관국장</u>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p> <p>② (생략)</p> <p>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u>소관과장</u>이 된다.</p>	<p>제4조(위원장) ①위원장은 <u>행정국장</u>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u>자치행정과장</u>이 된다.</p>
<p>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위원장이 의장이 되고,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② (생략)</p>	<p>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부 칙 이 조례는 <u>공포한</u>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이 조례는 <u>공포 후 1월이 경과한</u> 날부터 시행한다.</p>